

변경대비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변경 사항	변동성	결산	법 개정
1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0 마켓헤지증권투자신탁(H)(주식-파생형)	1)	-	-	-
2	미래에셋글로벌포커스 4.0 마켓헤지증권투자신탁(UH)(주식-파생형)	1)	-	-	-
3	미래에셋차이나심천 100 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파생형)	2)	-	-	-
4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 H 레버리지 2.0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3)	○	○	주 1)
5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 2.0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3)	○	○	주 2)
6	미래에셋차이나 A 레버리지 1.5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3)	-	-	주 1)
7	미래에셋차이나 H 레버리지 1.5 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3)	-	-	주 1)
8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4)	-	-	주 2)
9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5)	-	-	주 1)
10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2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	-	-	-
11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 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	-	-	-
12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주식)	6)	-	-	-
13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6)	-	-	-
14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 2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	-	-	-
15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	-	-	-
16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주식)	6)	-	-	-
17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투자신탁(주식)	6), 7)	-	-	-
18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	-	-	-
19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6)	○	-	-
20	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 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
21	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	○	○	-
2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주식)	-	○	○	-
23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 5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	○	○	-
24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
25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
26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	○	-
27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 2 호(주식)	-	○	○	-
28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	-
29	미래에셋스마트롱숏 70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	○	○	-
30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연금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주식)	-	○	○	-
31	미래에셋엠브렐러증권투자신탁(채권)	-	○	○	-
32	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25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	-
33	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35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

34	미래에셋자산배분 TDF2045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
35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 Q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	-	○	○	-
36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 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
3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 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
38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 40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
39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 40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	-

2. 변경 사항:

- 1) 모투자신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변경
- 2)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변경
- 3)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문구 추가
- 4)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
- 5) 환매수수료 삭제
- 6)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 7) 운용역 변경
- 8) 변동성 값 업데이트
- 9)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 10)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21년 5월 18일(화)

4. 변경 내용:

- 1) 모투자신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변경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p>[제 2 부 별첨 1]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나. (1) 투자대상</p>	<p>[파생상품]</p> <p>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p> <p>※투자비율: 위험평가액 기준 100% 이하</p>	<p>[파생상품]</p> <p>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p> <p>※투자비율: 위험평가액 기준 20% 이하</p>
<p>[제 2 부 별첨 1] 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나. (2) 투자제한</p>	<p>[파생상품 투자]</p> <p>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투자]</p> <p>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2)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변경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1) 투자대상	<p>[파생상품] <u>법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u>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p>	<p>[파생상품] <u>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u>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에 한한다.)</p>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나. (2) 투자제한	<p>[파생상품 투자] <u>파생상품</u>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투자] <u>파생상품</u>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투자] <u>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u></p> <p>[파생상품 투자] <u>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u></p>	<p>[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삭제></p> <p><삭제></p>

3)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문구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조(용어의 정의)	<신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 3 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생략> <신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생략> - <u>고난도금융투자상품</u>
제 55 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p>①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위험평가액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됩니다.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녹취, 숙려기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판매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숙려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의 기간)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p>②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주문의 사가 확정적임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주문을 집행합니다.</p> <p>③숙려기간 동안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투자 원본의 손실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④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p>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신설>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핵심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생략> <신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생략> 또한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요약정보> 분류</p>	<p><생략></p>	<p><생략>, 고난도금융투자상품 <u>*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위험평가액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됩니다.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녹취, 숙려기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판매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u> <u>*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u> <u>*숙려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의 기간)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u> <u>*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주문 의사가 확정적임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주문을 집행합니다. 숙려기간 동안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투자 원본의 손실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 <u>*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u></p>
<p><요약정보> 투자자 유의사항</p>	<p><신설></p>	<p>8.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요약정보> 주요투자 위험</p>	<p><신설></p>	<p>[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위험평가액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복잡성), 이로 인한 투자손실 가능성(손실위험성)이 높습니다.</p>
<p>제 1 부.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p>	<p><신설></p>	<p>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u>*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됩니다. 파생상품에 운용하는</u></p>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복잡성), 이로 인한 투자손실 가능성(손실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신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이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됩니다.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복잡성), 이로 인한 투자손실 가능성(손실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략> <신설>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략>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위험평가액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복잡성), 이로 인한 투자손실 가능성(손실위험성)이 높습니다.
제 5 부. 1.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위험평가액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제 7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됩니다. 판매과정이 녹취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녹취, 숙려기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판매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인 일반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판매회사에게 판매과정을 녹취한 파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숙려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 2 영업일 이상의 기간) 청약 또는 주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의 청약·주문 의사가 확정적임을 서명, 기명날인,

		<p>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한 후에 청약·주문을 집행합니다.</p> <p>-숙려기간 동안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투자 원본의 손실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판매회사는 숙려기간을 배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 청약·주문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p>
--	--	--

4) 클래스 가입자격 추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류 F	<p>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가입자</p>	<p>-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p> <p>-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p> <p>-법 시행령 제 103 조에 따른 금전신탁</p>

5) 환매수수료 삭제

[정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3 조(환매수수료)	<p>①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1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기간(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회사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종류 C1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5, 종류 C-e, 종류 S 주식, 종류 CG 주식</p> <p>가.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p> <p>나. 90 일이상 : 이익금의 0%</p>	<p>① <삭제></p> <p>②<삭제></p>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	------

<환매수수료>	종류 C1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	환매수수료 없음
	류 C4 주식, 종류 C5, 종류 C-e, 종류 S 주식, 종 류 CG 주식: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	

6)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가치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u>이현진(책임), 정원택(부책임)</u>	<u>정원택(책임), 권혁범(부책임)</u>

-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u>이현진(책임), 권혁범(부책임)</u>	<u>정원택(책임), 권혁범(부책임)</u>

7) 운용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u>이현진(책임), 권혁범(부책임)</u>	<u>정원택(책임), 권혁범(부책임)</u>

8)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변경
	등급	등급	전(%)	후(%)

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4	4	7.72	8.46
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투자자신탁 1 호(주식)	2	2	19.83	23.14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로스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주식)	2	2	17.52	20.62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 50 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주식혼합)	5	5	4.43	4.6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채권혼합)	4	4	9.17	9.55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자회사(채권혼합)	4	4	5.66	6.5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 2 호(주식)	1	1	31.51	34.01
미래에셋스마트롱숏 70 증권투자자신탁 1 호(주식)	4	4	5.6	6.34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 1 호(주식)	3	3	12.45	14.06
미래에셋엠브렐러증권투자자신탁(채권)	5	5	3.2	3.45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 H 레버리지 2.0 증권투자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1	1	42.59	42.15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 2.0 증권투자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1	1	41.25	47.67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 Q 증권투자자신탁 1 호(주식)	2	2	16.09	16.89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투자자신탁 1 호(주식)	1	1	27.07	29.9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로스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채권혼합)	4	4	5.98	7.73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채권혼합)	4	4	6.51	7.1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 40 증권투자자신탁 1 호(채권혼합)	4	4	6.99	7.91
미래에셋퇴직플랜브라질업종대표 40 증권투자자신탁(채권혼합)	3	3	11.85	12.76

10)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주1)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합투자규약] 주2)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u>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u>	① <u>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u>

	<p>②~③<생략> ④<신설></p>	<p>②~③<생략>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	--------------------------------------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별첨]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 경력

- 1) 성명: 정원택 팀장
- 2) 주요경력

(09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2. 운용현황(2021.04.30 현재 공모펀드, 설정액 기준)

투자신탁명	설정일	설정액(백만원)
미래에셋가치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0-10-28	66,776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3-05-31	40,117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018-04-30	10,542

3. 운용성과(2021.04.30 현재 공모펀드 나열, 기간별 수익률, %)

투자신탁명	1개월	3개월	6개월	설정 이후
미래에셋가치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4.64	12.87	44.92	212.78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2	18.93	52.42	104.39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90	9.33	29.57	53.58

[별첨]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1. 경력

1) 성명: 권혁범 매니저

2) 주요경력

(15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부문

2. 운용현황(2021.04.30 현재 공모펀드, 설정액 기준)

투자신탁명	설정일	설정액(백만원)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0-10-28	134,806
미래에셋배당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019-05-22	10,000
미래에셋변액보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2020-07-20	9,586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018-04-30	10,542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6-07-18	10,791

3. 운용성과(2021.04.30 현재 공모펀드 나열, 기간별 수익률, %)

투자신탁명	1개월	3개월	6개월	설정 이후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4.97	11.61	41.98	167.98
미래에셋배당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7.38	21.06	37.72	34.92
미래에셋변액보험고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4.93	11.38	42.06	45.83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2.90	9.33	29.57	53.58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5.21	14.01	45.16	93.82